

■ 「현금 IC 카드 이용약관」 개정대비표

1. 개정내용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 1 조 (목적)~제 11 조(수수료) (생략)</p> <p>제 12 조(손해배상 및 면책)</p> <p>① 은행은 카드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<u>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</u>를 보상합니다</p> <p>②~④ (생략)</p> <p>제 13 조 (카드의 반납)~제 17 조(관할법원)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부칙 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 약관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.</p>	<p>제 1 조 (목적)~제 11 조(수수료) (좌동)</p> <p>제 12 조(손해배상 및 면책)</p> <p>① 은행은 카드의 위·변조로 발생한 사고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, <u>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’ 제 2 조 제 1 항 제 1 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</u>를 보상합니다. 다만,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합니다.</p> <p>②~④ (좌동)</p> <p>제 13 조 (카드의 반납)~제 17 조(관할법원) (좌동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 부칙 -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이 약관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.</p>	<p>전자금융거래 약관으로써 “「전금법」 제9조에 따른 3종의 전자금융거래사고 유형 중 일부를 누락한 조항”에 해당하므로, 누락된 전자금융거래사고 유형을 추가하여 개정함</p> <p>초과손실액 발생시 보상부분 추가함</p>

2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